

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연철흙 의원 등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8년 3월 14일
-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5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 및 개별 법령 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
-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에 따라 시군으로 위임한 사무 수수료와 법령에 동일한 규정이 있어 사실상 불필요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수수료 근거 상위법령 일부 개정 사항 반영(안 제5조, 안 별표1)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(수급권자 범위) 조문 삭제 반영
 -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(승강기보수업 → 승강기

유지관리업)

-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 삭제(안 별표1)
 -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 사항 반영
-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삭제(안 별표1)
 - 의료법 제80조의 개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주체가 시·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어 해당 수수료 삭제
-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 수수료 삭제(안 별표1)
 -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에서 시군 위임사무로 규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수수료 징수 근거 없음
- 공유 수면 면허 수수료 산정기준표 삭제(별표1)
 -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(수수료 산정기준) 준용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 및 개별 법령 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에 따라 시군으로 위임한 사무 수수료와 법령에 동일한 규정이 있어 사실상 불필요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수수료 근거 상위법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과(안 제5조, 안 별표1),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(안 별표1)
- 의료법 제80조의 개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주체가 시·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삭제(안 별표1)
-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군 위임사무로 규정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 수수료 삭제(안 별표1),
-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(수수료 산정기준) 준용하고자 공유수면 면허 수수료 산정기준표를 삭제(별표1)하고자 하는 것임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와 충청북도, 그리고 시·군과 사무의 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